

2. 이용계약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 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이용계약을 통해 기관과 서비스제공자, 이용 대상자와 보호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준수하며 이용 대상자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이용대상자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낮 동안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존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나누어 가진다.

제9조 (이용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10068호 제2조에 근거를 둔다.

1.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이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은 갱신된 유효기간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
4.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동일한 등급이 아닐 경우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비고의적 사고의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수급 총 금액의 15%를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2018.8부터 시행. 노인장기요양법개정)
3. 비급여 부분에 있어 중식비는 1일 2,000원을 한다. (2022.01부터 시행.) 다만 보호자와 이용자의 요구로 아침 1식 1,000원으로 하되 아침, 저녁 1식 1,500원 (2023.09부터 시행, 2023년 06월 29일 운영위원회 합의제) 식단표 3찬으로 제공한다.
4.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비급여 비용 (식대)을 지불하여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나올 때까지 일일 20,000원을 지급하고 등급 시점부터 장기요양보험 기준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 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일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장기요양급여비용 (감경)		91%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91% 또는 94%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2018.08 부터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94%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초)		100%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일반)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장기요양급여비용 (감경)		9%	보험공단이 91% 또는 94% 이고 개인 부담금이 9% 또는 6%임. (2018.08 부터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6%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초)		0	보험공단이 100%이고 개인 부담금이 0%임.
	비 급 여	식사재료비	4,500원	중식은 2,000원 아침 1식 1,000원, 저녁은1,500원 추가 부담
		간 식	0	1일 2회(오전, 오후)
		기 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기저귀, 뉴케어,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본인부담금 청구시 함께 청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나 본인이 직접 지불한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표 참고 (뒷면)

제12조의1 (이용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4.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및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제12조의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 또는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5. 수급자가 청결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6. 보호자회의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10. 개인정보 열람 및 서비스 진행 사항에 대해 알 권리
- 11.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의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급여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저소득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대상 선정 또는 제외 대상이 된 경우, 보호자의 기관에 통보의무

제13조 (서비스의 제한)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자 · 기관의 의무 및 권리)

1. ‘이용자’ 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월 이용료 납부
 - 나. 주간보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단, 급여초과 시 이용자 혹은 보호자와 합의하여 진행)
 -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라. 기타 ‘제공자’ 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기관’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나. 급여제공 중 ‘이용자’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 에게 통보
 - 다.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 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라.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 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마.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바.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사.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5조(계약해제)

1.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3.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6.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7. 이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루 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기타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제한다.
9. 7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비급여 항목 비용안내

(2023.01.01기준)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1일/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9% / 6%

○ 비급여 항목 비용

항 목	비 용
식사재료비	1일 1식(중식/ 간식비 포함) 2,000원 조식 제공시 1식 1,000원 석식 제공시 1식 1,500원(23.03.01부터)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및 비급여 항목 비용안내

(2023.01.01기준)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이용시간별 급여비용(1일/원)

구 분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4,980	41,520	39,620	37,730	37,73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60,330	55,680	53,800	51,880	51,88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75,060	69,280	67,400	65,470	65,47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82,690	76,380	74,440	72,550	65,470
13시간 초과	88,640	81,920	80,000	78,100	65,4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9% / 6%

○ 비급여 항목 비용

항 목	비 용
식사재료비	1일 1식(중식/ 간식비 포함) 2,000원 조식 제공시 1식 1,000원 석식 제공시 1식 1,500원(23.03.01이후)